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안번호 제810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30 고성군수
- 나. 회부일자 : 2003. 6. 30
- 다. 상정·의결일자 : 2003. 7.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주문

-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함.

4. 주요골자

- 별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4,512만 5천원으로서 그중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보면 고품질 쌀생산 조성사업외 60건에 23억 248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4,587만 7천원을 지출하고 10억 4,770만 5천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 890만 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편성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사용 실과 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서 충당한 것은 없는가 또한 예산편성에 편입되어야 할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은 없는가와 그 외 집행상 과오, 과다집행된 예산과, 불요 예산이 없었는가, 과다불용사유 등 지출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차원에서 심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6. 질의 및 답변 : 없음

7. 토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03. 7. 1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